

착유가축 검사의 항목·방법 및 기준(제10조제2항 관련)

1. 착유시설 및 착유가축의 위생관리에 대한 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착유가축 검사대장의 검사항목에 따른다.
2.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착유가축의 검사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낙유를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바목 중 분만 후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가축에서 기능성 식품 또는 의약품 제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도로 착유한 원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가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·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
 - 나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축
 - 다. 항생물질·합성항균제 등을 사용한 후 그 제제의 휴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가축
 - 라. 생물학적 제제의 주사로 인한 뚜렷한 이상반응을 나타내는 가축
 - 마. 황달·방선균증·농독증·유방염·패혈증·부패성자궁염·중독증 또는 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
 - 바. 분만 후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가축 또는 이상유를 분비하는 가축